

17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약칭:집시법)」상 다음 ()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? (2015년 2차 기출문제)

-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㉠시간 이내에 주취자에게 ㉡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.
-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㉢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① ㉠ - 12, ㉡ - 12, ㉢ - 10
- ② ㉠ - 24, ㉡ - 12, ㉢ - 7
- ③ ㉠ - 12, ㉡ - 24, ㉢ - 7
- ④ ㉠ - 12, ㉡ - 24, ㉢ - 10

정답) ④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(신고서의 보완 등)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취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.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(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)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18.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5년 2차 기출문제)

-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.
- ② 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·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.
-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,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도가 비교적 낮다.
-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,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중첩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.

정답) ①

지문의 내용은 삼각형에 대한 설명이다.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~3명을 두고 다시 주공작원이 각각 2~3명의 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출 가능성이 높고,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.

19. 「국적법」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5년 2차 기출문제)

- ① 대한민국의 「민법」 상 성년일 것
-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
-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
- ④ 품행이 단정할 것

정답) ③

국적법 제5조(일반귀화 요건)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
- 2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 상 성년일 것
- 3. 품행이 단정할 것
- 4. 자신의 자산(資産)이나 기능(技能)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
- 5.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(素養)을 갖추고 있을 것

20. 「범죄인 인도법」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2015년 2차 기출문제)

-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
-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
-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
-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

정답) ④

범죄인인도법 제7조(절대적 인도거절 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
- 2.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(係屬)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
- 3.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. 다만,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4. 범죄인이 인종, 종교, 국적, 성별,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범죄인인도법 제9조(임의적 인도거절 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
- 2.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
- 3.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
- 4.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(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
- 5.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(非人道的)이라고 인정되는 경우